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

건설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

2015년 12월 15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건 설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1월 17일 ,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8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
제1차 건설복지위원회(2015.12. 2.)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최은수 복지환경국장)

가. 상정 이유

긴급복지지원법」(법률 제12934호, 2014.12.30. 공포, 2015.7.1.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1)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(안 제3조)

2) 긴급지원심의위원회 (안 제7조)

-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기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″생략″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　　략)

5. 토　　론　　요　　지 (없　　음)

6. 수정안의 요지 (없　　음)

7. 심　　사　　결　　과 : 원안 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